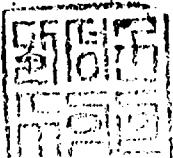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비자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 정수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민 호 39

제출일자 : '99. 7. 16

제출자 : 달성군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비자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정수조례의 근거 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자연 발생 유원지인 비자정관광지를 찾는 입장객에게 정수하는 쓰레기수거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자 함.

2.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3. 주요 내용

- 비자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정수조례 전면 개정
- 비자정관광지 관리조항 신설 (군수, 읍·면장, 마을·단체·개인·위탁 관리)
- 비자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상향 조정 (단위 : 원)

현 행		개 정	
대 인	소 인	대 인	소 인
300	200	1,000	500

- 위탁관리시 수탁자 세입 수수료 비율 신설

위탁 관리기간 중 정수 총금액	세 입 수 수 료	비 고
300만원까지	연 계	
300만원초과	300만원 초과 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입법예고사항

- 예고기간 : '99. 6. 1 ~ '99. 6. 20
- 방 립 : 공보개재
- 특기사항 : 없 음

대구광역시 날성군 비자정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이하 “비자정관광지”라 한다)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정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도·군립 공원과 관광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행락객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 처리에 필요한 경비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이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비자정관광지내의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등 행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비자정관광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비자정관광지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행위, 행락질서 개선 및 오입행위 예방 활동,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기타 등·식물등 자연 훼손 막기 활동 등을 말한다.

제 3 조 (구역지정 및 공고) ① 군수는 비자정관광지 중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수거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역폐지 및 변경) ① 군수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특별관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 (관리) ① 비자정관광지내의 공공 시설물 관리와 행락객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는 군수가 하되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 6 조 (수수료 징수) ① 군수는 비자정관광지 중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수료는 입장하는 행락객 및 청소의무자 (건물 또는 토지의 침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 가격에 의한다.
- ③ 군수 또는 관리원의 수탁자는 비자정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수료 징수권 (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행락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 제 7 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비자정관광지 구역안에 기주하는 자
3.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자
4. 비자정관광지내에 소재한 사찰의 신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8 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 또는 관리원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환경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해손하는 자
 4. 기타 비자정관광지 관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 9 조 (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수수료의 세입 및 납입) ① 군수는 정수한 수수료를 매일 18:00 현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일개표를 작성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현금출납부를 정리하고 다음날 10:00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위탁 관리시에는 수탁자는 수탁기간내 정수된 수수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기 수탁자가 납입하여야 할 수수료의 비율은 정수한 수수료의 총액중 300만원 까지는 민세하고 300만원을 초과 할때에는 초과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시기야 한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일 현재 수지결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장권의 관리 및 수불) ① 군수는 입장권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100매 단위로 제조하고 관계공무원이 보관·관리도록 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제조·검인 교부대장을 미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시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관리 대장을 미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수료의 사용)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조치 된 수수료를 당해 미지정관광지의 수수료 정수입부 종사자 인건비, 쓰레기수거자리비, 광광시설정비, 환경보존에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입부의 위임 및 위탁)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수에 관한 입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읍·면장은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4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광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지정관광지 위·수탁 관리 계약서

1. 비지정관광지 명칭 :

2. 위 치 :

3. 구 역 및 면적 :

상기 비지정관광지를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달성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비지정관광지 환경정화에 있으므로 “갑”과 “을”은 합심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제 2 조 (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변경 또는 재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비지정관광지에 입장하는 행객에게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 비지정관광지의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각종 시설물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기타 행락객들의 행락질서 계도와 오염행위 단속 등 자연 해손 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수료징수 및 관리방법) ① “을”은 징수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계표를 작성한 후 현금출납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및 비자정판광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종량제 규격봉투등 구입비용은 납입 수수료 면제 금액에 포함한다.)

④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입장권은 1개월동안 소요될 예상량을 “갑”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수료 수입금중 일정금액 군 납입)

① “을”이 수탁관리 기간중 징수한 수수료 수입 총액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갑”에게 납입조치하여야 하며 그 기한 및 비율은 대구광역시달성군비자정판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시켜야 한다.

제 6 조 (수수료, 면제, 입장객 거절 및 퇴장, 수수료 환불)

수수료 면제, 입장거절 및 퇴장, 수수료환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비자정판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비지정관광지 입장객 2명당 종량제규격봉투 10리터를 기준으로 1매씩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거쓰레기 처리) “을”은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일정한 집하장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한다.

제 9 조 (청소 및 시설의 유지 · 관리) “을”은 자율적인 방법 또는 인부고용 등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금지사항)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구역내 건축(공작)물의 신·증축 또는 개축 행위
2. 계약권의 양도
3. 정수된 수수료의 입의 사용

제 11 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했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손해 배상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1. 제3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10조의 금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 12 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계약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1부

년 월 일

갑 : 달성군수 (인)

을 : (인)

【별지 제2호】

수수료의 요율표(제6조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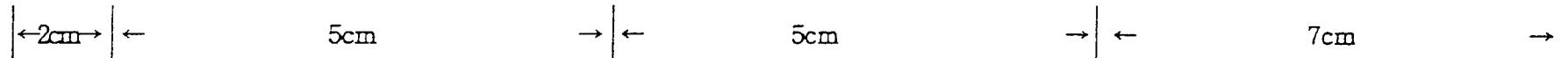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급 애	1,0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 : 13세 이상 65세 미만○ 소인 : 6세 이상 13세 미만

【별지 제3호】

〈앞면〉

비자정관광지 입장권



↑ 면 체 크 리 8cm 마 리 →	NO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수수료							
영수원부(보관용)								
<input type="radio"/> 비자정관광지 수수료								
<table border="1"><tr><td>구 분</td><td>대 인</td><td>소 인</td></tr><tr><td>금 액</td><td>1,000원</td><td>500원</td></tr></table>			구 분	대 인	소 인	금 액	1,000원	500원
구 분	대 인	소 인						
금 액	1,000원	500원						
199 . . .								
달 성 군 수								
↓ 면 체 크 리 8cm 마 리 →	NO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한 수수료							
영수증								
<input type="radio"/> 비자정관광지 수수료								
<table border="1"><tr><td>구 분</td><td>대 인</td><td>소 인</td></tr><tr><td>금 액</td><td>1,000원</td><td>500원</td></tr></table>			구 분	대 인	소 인	금 액	1,000원	500원
구 분	대 인	소 인						
금 액	1,000원	500원						
199 . . .								
달 성 군 수								
※ 본 유원지 환경을 청결하 게 하는데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경								

<금>

안내도	주의사항	
7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계곡에서 천사행위나 개등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씨를 사용하지 맙시다. ○ 쓰레기나 오줌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접하장에 버리도록 합시다. 	

【별지 제4호】

수 입 일 계 표

년 월 일

구 분	당 일		누 계		비 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1,000원권 (대 인)					
500원권 (소 인)					

【별지 제5호】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적 요	입 금	출 금	잔 고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 제조·점인 교부대장

(단위 : 원, 권, 매)

일자	제조				점인 교부				잔량		수령인
	금화	누개	금화	누개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관리 대장

일자	수령매수		판매매수		잔량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 500원권, 1,000원권을 구분하여 사용